2026. 11. 1. 자 규정 제·개정 사전의견수렴

2026. 10.

울산과학대학교
ULSAN COLLEGE

<목 차>

Ⅰ. 규정 제정(안) ····· 3

B-000 디지털배지운영규정 제정안 ····· 4

F-000 5극3특공유대학사업단운영규정 제정안 ·····

F-000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운영규정 제정안 ·····

Ⅱ. 규정 개정(안) ····· 23

(*)B-101 직제규정 개정안 ····· 26

(*)B-102 업무분장및위임전결규정 개정안 ····· 28

(*)B-201 교원임용규정 개정안 ····· 32

(*)B-202 울산과학대학교교원보수규정 개정안 ····· 34

(*)B-203 외국인교원채용규정 개정안 ····· 36

(*)B-204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 개정안 ····· 38

(*)B-205 초빙교원임용규정 개정안 ····· 40

(*)B-206 겸임교원에관한규정 개정안 ····· 42

(*)B-209 교수업적평가규칙 개정안 ····· 44

(*)B-210 전임교원주당책임시간및초과수당지급규정 개정안 ····· 48

(*)B-302 울산과학대학교일반직원복무규정 개정안 ····· 50

(*)B-417 대학기금운영규정 개정안 ····· 52

B-502 수강지도세칙 개정안 ····· 54

B-526 학생역량인증제규정 개정안 ····· 57

B-527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개정안 ····· 59

B-529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 개정안 ····· 61

B-541 공학기술교육인증규정 개정안 ····· 63

B-542 공학기술교육센터운영규정 개정안 ····· 66

B-543 국내타대학등과의학점교류에관한규정 개정안 ····· 68

I. 규정 제정(안)

순번	상정안건 및 주요내용	발의부서	쪽
1	**B-000 디지털배지운영규정** 가. 2026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디지털배지 인증 체계 구축」 나. 국제 표준에 기반한 디지털배지 인증·발급·관리하기 위한 운영 기준 마련	직업교육혁신센터	4
2	**F-000 5극3특공유대학사업단운영규정** 가. (앵커사업) 5극3특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앵커사업단	9
3	**F-000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운영규정** 가. (교육부)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기획팀	16

B-000 디지털배지운영규정 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8.
제출부서/제출자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팀/고일섭

1. 제정 이유

가. 2026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디지털배지 인증 체계 구축」

나. 국제 표준에 기반한 디지털배지 인증·발급·관리하기 위한 운영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관리주체를 규정함

나. 디지털배지 종류 및 발급기준, 발급절차, 외부 연계 및 질관리를 규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1)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팀-34(2026. 4. 27.)「2026학년도 직업교육혁신센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중 “디지털배지 인증 체계 구축” 과제

2)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실-205(2026. 6. 5.)「2026학년도 디지털배지(Digital Badge) 인증 운영 계획(안)

나. 관련부서 협의 : 교수학습지원센터(2026. 9. 2.)

다. 관련 위원회 심의 : 직업교육혁신위원회(2026. 9. 21.)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 사전 보고완료

「디지털배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학생 및 구성원의 학습 경험과 역량 성취를 국제 표준에 기반한 디지털배지로 인증·발급·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가 발급하는 디지털배지에 적용한다.

②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등 외부 인증기관이 주관하여 발급하는 디지털배지(이하 "외부 인증배지"라 한다)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배지 운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배지"란 교육과정 이수, 자격 취득, 역량 달성 등의 성취를 온라인에서 검증·공유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디지털 인증서로서, 발급기관·취득조건·수령자 정보·검증 URL 등을 메타데이터로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오픈배지"란 디지털 크레덴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발급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상호 검증이 가능한 디지털배지를 말한다.
3. "발급 부서"란 디지털배지를 설계·발급하는 본 대학교의 부서·센터·사업단을 말한다.
4. "수령자"란 발급 기준을 충족하여 디지털배지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단위 배지”란 하나의 완결된 교육과정의 이수 또는 개별 핵심역량의 달성을 인증하는 디지털배지를 말한다.
6. “통합 배지”란 복수의 단위 배지를 결합하여 직무 또는 역량의 종합적 달성을 인증하는 디지털배지를 말한다.
7. “배지 정의서”란 배지의 명칭, 발급 기준, 증빙 유형, 외부 준거 정렬 정보 등을 기재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 문서를 말한다.
8. “연계 인정”이란 외부 인증 배지를 본 대학교의 배지 체계에서 확인·기록하고 통합 배지의 결합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권한) ①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은 업무분장및위임전결규정(UCS-B-102)에 따른다.

② 디지털배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직업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관리주체) ① 디지털배지 운영의 총괄 부서는 직업교육혁신센터로 하며, 발급 플랫폼 운영, 발급 표준 수립, 발급 현황의 통합 관리 및 질 관리를 담당한다.

② 디지털배지의 발급기관은 본 대학교로 하며, 디지털배지에는 발급자 명의 및 직인을 포함하여 표

시할 수 있다.

③ 학부(과), 부속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발급 부서로서 배지의 설계·운영 및 이수 확인을 담당한다.

제2장 디지털배지의 종류 및 발급 기준

제6조(디지털배지의 유형) ① 본 대학교의 디지털배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교과 기반 직무 배지: 직무 또는 직무역량 단위로 설계된 소단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하는 배지
2. 비교과 기반 배지
   가. 핵심역량 배지: 핵심역량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누적 실적이 「학생역량인증제운영규정(UCS-B-526) 제3장 역량 인증 체계」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하는 배지
   나. 산업체 수요 기반 배지: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산업체가 교육과정의 설계·평가에 참여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배지
   다. 사업단별 특화 배지: 본 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업단이 해당 사업의 목적·특성에 따라 특화하여 운영하는 배지
3. 그 밖에 직업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지

② 교과 기반 직무 배지는 직무 또는 직무역량을 단위로 설계하여야 하며, 개별 교과목의 이수 사실만으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발급 기준) ① 배지는 사전에 승인된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급 부서는 배지별 발급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총괄 부서에 등록하며, 기준의 적정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지를 발급할 수 없다.

1.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학습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총괄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3장 발급 및 수여

제8조(발급 원칙) ① 디지털배지는 수령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급 부서가 기준 충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확보된 경우에는 신청 없이 발급할 수 있다.

② 수령자는 발급된 디지털배지의 수락 여부 및 외부 공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활용 및 동의) ① 발급 부서는 발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발급 부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급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처리위탁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공개한다.

제10조(발급 절차) ① 배지의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 설계(유형, 디자인, 발급기준, 발급대상, 발급비용 등) 및 총괄부서 승인
2.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
3. 이수자 평가 및 검증
4. 수령자의 발급 신청 또는 동의 확인
5. 배지 발급 및 시스템 등록
6. 수령자에게 통지 및 활용 안내

제11조(재발급 및 취소) ① 재발급은 동일 배지에 대한 접근 권한의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급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배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급된 배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수령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령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미 발급된 디지털배지의 효력은 발급 당시의 기준에 따르며, 발급 기준의 개정 또는 해당 교육과정·프로그램의 폐지를 이유로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4장 외부 연계 및 질 관리

제12조(외부 연계) 외부 연계는 발급 부서에서 총괄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총장 명의의 협약으로 추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외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기업, 공공기관과 연계
2. 지자체와 연계
3. 기타 대학과 협약 또는 협업을 하는 기관과 연계

제13조(질 관리 및 환류) ① 총괄 부서는 디지털배지의 발급 현황 및 활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CLOVER 시스템 등 본 대학교의 학습 분석 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혁신위원회는 매 학년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디지털배지 발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배지 등에 대하여 발급 기준의 조정·통폐합·발급 중단 및 확산 방안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총괄 부서는 사업의 종료 등으로 발급 부서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 배지의 관리 주체를 연계 학과 또는 부서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된 배지의 효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④ 2년 연속 발급 실적이 없는 배지는 직업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5조(관련문서)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역량인증제운영규정(UCS-B-526)
2.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UCS-B-52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F-000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운영규정 제정(안)

제출연월일	2026. 10.
제출부서/제출자	앵커사업단운영팀/ 심현미

1. 제정 이유

가. 관련근거: 교육부 5극3특 공유대학 운영

나. 5극3특 발전을 뒷받침할 지역대학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에 중심대학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사업단운영규정 신설

2. 주요 내용

- 5극3특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단운영규정 제정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련 규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근거: 교육부 2026년 앵커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2026. 5.)

나. 관련부서 협의: 앵커사업단-기획팀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설명자료: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 경상국립대학교 5극3특 공유대학 설명자료 外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5극3특 권역 단위로, 대학 간 교육·연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공유대학을 구성하고 5극3특 발전을 뒷받침할 지역대학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과학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앵커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단의 제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대학의 별도 규정 및 지침에 우선하여 운영하고, 교육부의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단, 사업비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UCS-B-102)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대학”이란 참여대학이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자원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체계를 말한다.

②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5극3특 공유대학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③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교육부의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울산과학대학교 내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주관대학”이라 함은 사업계획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대학으로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거점국립대를 말한다.

⑤ “중심대학”이라 함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재교부받아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대학을 말한다.

⑥ “운영대학”이라 함은 각 전공 및 트랙을 주관하여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⑦ “참여대학 ”이라 함은 각 전공 및 트랙에 교원 및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을 말한다.

⑧ “참여학생”이라 함은 참여대학에 재학하면서 공유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제5조(운영기간) ① 사업단 운영기간은 사업기간인 2026년 사업시작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연도별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연차계획 수립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사업전담조직) ① 총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전담조직('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본 사업단에 사업단장(사업책임자)을 두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③ 본 사업단에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사업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업단장을 보좌한다.

④ 사업단에는 운영실을 둘 수 있으며, 운영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 본 사업단에 교육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⑥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원, 연구원 및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업무)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운영규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대학 내에 주관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공유대학 기획(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본 사업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유대학 기획(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기능)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심의
3.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심의
4.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기타 총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공 교육과정위원회

제11조(구성) 공유대학 참여대학간 원활한 교육과정 논의를 위하여 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① 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는 중심대학 및 참여대학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공 주임교수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과장이 담당한다.

② 위원은 참여대학별 교원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산업체·유관기관 위원 2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산업체 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2조(기능)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유대학 전공교육과정의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별 교육과정과 공유대학 교육과정 간의 연계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
4. 공유교육과정의 신설·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

제1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총장의 요구에 의해 성과평가가 필요할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교육센터 위원회는 중심대학 및 참여대학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센터장으로 한다.

② 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중심대학 및 참여대학의 참여학과 교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유관기관 위원 2명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산업체 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5조(기능)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유교육과정의 운영 및 대학 간 교육자원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대학 간 공동강의, 공동교육, 온라인·대면 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교육플랫폼·교육콘텐츠 등 공유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집행의 점검 및 평가

제17조(집행점검 및 보고) ① 총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총장은 제3항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9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대학은 대응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 집행에 따른 세부기준은 전문기관의 「5극3특 공유대학사업비 관리·운영 지침」 등을 근거로 대학 회계 및 예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집행기간) 국고보조금은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기간 연장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비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실적 및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1. 5극3특 공유대학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규정한 경우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정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
3. 기타 5극3특 공유대학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부당사용으로 본다.

1. 5극3특 공유대학 사업비 관리·운영 지침에 위반한 집행
2. 지출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제8장 보 칙

제24조(보고의무)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 추진현황, 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과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F-000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운영규정 제정(안)

제출연월일	2026. 10.
제출부서/제출자	기획팀/홍성욱

1. 제정 이유

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관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운영규정 신설

2. 주요 내용

-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단운영규정 제정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련 규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근거: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2279(2026.10.12.) 2026년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 안내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의 특성화와 구조 개편을 통해 전문대학의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단의 제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 훈령·고시 또는 시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단, 사업비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UCS-B-102)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

② “사업전담조직“이라 함은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본 사업단을 말한다.

제5조(운영기간) ① 사업의 운영기간은 전문기관이 정한 사업시작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연도별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연차계획 수립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사업전담조직) ① 총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전담조직(‘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본 사업단에 사업단장(사업책임자)을 두며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③ 본 사업단에 사업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사업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업단장을 보좌한다.

④ 사업단에는 운영실을 두며 운영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 사업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원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조직구성 및 역할) 사업단에는 세부 사업분과를 둔다.

1. 특성화 재구조화분과: 특성화 학부(과) 개편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교육혁신분과: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성화 산학·취업분과: 산학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업무) ① 사업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운영규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대학 내에 주관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이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전략 수립 및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업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②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심의
③ 사업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심의
④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⑤ 기타 총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성화자체평가위원회

제12조(위원회 구성)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원, 직원, 재학생을 포함한 내부인사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3조(위원회 기능)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계획 수립
2. 자체평가 추진사항 점검
3.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4.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총장의 요구에 의해 성과평가가 필요할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 평가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방법) ① 평가영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단이 자체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성과지표는 사업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평가한다.

제5장 특성화사업운영위원회

제17조(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성과·사업비 통합관리를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위원회 기능)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예산 집행 모니터링

② 사업비 집행률 점검 및 관리

③ 행정부서별 예산집행현황 주기적 점검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특성화소통위원회

제20조(위원회 구성) 특성화사업 주요 현안의 내·외부 협의 및 연계·협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1조(위원회 기능)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학과·정원 재구조화 및 교육혁신 의견수렴

② 산·학·연·관 협력 및 사업성과 공유·확산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집행의 점검 및 평가

제23조(집행점검 및 보고) ① 총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5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대학은 대응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 집행에 따른 세부기준은 전문기관의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등 지침을 근거로 대학 회계 및 예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7조(사업비 집행기간) 국고보조금은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기간 연장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사업비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실적 및 관련서류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①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에 명시된 사용용도와 집행 불가항목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부당사용으로 본다.

1.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비 관리·운영지침에 위반한 집행
2. 지출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제9장 보 칙

제30조(보고의무)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 추진현황, 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과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II. 규정 개정(안)

순번	상정안건 및 주요내용	발의부서	쪽
1	**B-101 직제규정** 가. 5극3특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전담 사업단 및 교육센터 직제 신설 나.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직제 신설	앵커사업단 기획팀	26
2	**B-102 업무분장및위임전결규정** 가.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추가 나. 직업교육혁신센터의 업무분장에 디지털배지 운영 업무를 신설함	앵커사업단 기획팀 직업교육혁신센터	28
3	**B-201 교원임용규정** 가.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관련 주저자 논문편수에 포함하는 K-MOOC콘텐츠의 인정기준을 구체화: K-MOOC(15주차) 이상 나. [별표 3-1] 연구실적물 배점 차등 적용 - K-MOOC콘텐츠(15주차): 80점 - K-MOOC콘텐츠(8주차): 40점	교무팀	32
4	**B-202 울산과학대학교교원보수규정** 가. 직제 신설에 따른 교원보직수당 표 개정	교무팀	34
5	**B-203 외국인교원채용규정** 가. 외국인교원 교수업적평가 기준, 배점 등 조정 및 정비	교무팀	36
6	**B-204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 가. 강의전임교원 교수업적평가 기준, 배점 등 조정 및 정비	교무팀	38
7	**B-205 초빙교원임용규정** 가. 상위법령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용제한 조항 삭제 :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합하여 법정 교원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문구 삭제	교무팀	40

순번	상정안건 및 주요내용	발의부서	쪽
8	**B-206 겸임교원에관한규정** 가. 상위법령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용제한 조항 삭제 :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합하여 법정 교원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문구 삭제	교무팀	42
9	**B-209 교수업적평가규칙** 가. 교수업적평가 기준, 배점 등 조정 및 정비	교무팀	44
10	**B-210 전임교원주당책임시간및초과수당지급규정** 가. 직제 신설에 따른 교원보직수당 표 개정	교무팀	48
11	**B-302 울산과학대학교일반직원복무규정** 가. 제22조(특별휴가)제1항 2호 회갑, 5호 탈상 삭제 나. 제22조(특별휴가)제1항 4호 사망 대상별 휴가 일수 변경	총무팀	50
12	**B-417 대학기금운영규정** 가. 기금관리위원회는 특정목적기금 적립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 나.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자금 운영계획, 운용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재무회계팀	52
13	**B-502 수강지도세칙** 가. 2027년도 신입생부터 간호학과 졸업학점 축소(137→134학점)	교무팀	54
14	**B-526 학생역량인증제규정** 가. 학생역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인증점수 및 획득 기준점수의 세부기준 근거를 정비하고, 인증서 발급 방식에 디지털배지를 추가	직업교육혁신센터	57
15	**B-527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가. 졸업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최대학점 확대(4→6학점) 나. 계절제 현장실습 성적부여를 평점 또는 SS, S/U에서 SS, S/U로 부여함	현장실습지원센터	59

순번	상정안건 및 주요내용	발의부서	쪽
16	**B-529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 가. 디지털배지운영 업무 추가 나. 디지털배지 운영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근거 마련	직업교육혁신센터	61
17	**B-541 공학기술교육인증규정** 가. 2027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기계기스템전공자의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신규 인증에 따른 규정 정비	공학기술교육센터	63
18	**B-542 공학기술교육센터운영규정** 가.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확대 및 운영체계 정비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평가·개선에 대한 공학기술교육센터의 지원 업무 명확화	공학기술교육센터	66
19	**B-543 국내타대학등과의학점교류에관한규정** 가. 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는 재정지원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에 한해 받음 나.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의 절차 추가	교무팀	68

B-101 직제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1.
제출부서/제출자	앵커사업단운영팀 / 심현미 기획팀 / 홍성욱

1. 개정 이유

가. (앵커사업) 5극3특 발전을 뒷받침할 지역대학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에 중심대학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 직제 및 운영규정 신설

나. (교육부)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직제 신설

2. 주요 내용

가. 5극3특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전담 사업단 및 교육센터 직제 신설

나.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사업단 신설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규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근거:

1) 교육부 2026년 앵커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2026.5.)

2)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2279(2026.10.12.) 2026년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 안내

나. 관련부서 협의: 앵커사업단-기획팀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설명자료: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 경상국립대학교 5극3특 공유대학 설명자료 外

B-101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5조(부속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학술정보원, 예비군대대, 대학언론부, 장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원, 학생생활관,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인권센터, IR센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술사관육성사업단,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단,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AID-X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글로벌전문기술인재양성사업단,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단, <신설>, <신설>	**제15조(부속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학술정보원, 예비군대대, 대학언론부, 장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원, 학생생활관,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인권센터, IR센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술사관육성사업단,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단,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AID-X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글로벌전문기술인재양성사업단,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단,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	신규사업 직제 신설
<신설>	제15조의34(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 ① 5극3특 공유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에 공유대학교육센터, 운영실을 둔다. ②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센터장, 운영실장 보임은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정관 제97조에 따른다.	
<신설>	제15조의35(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 ①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에 운영실을 둔다. ②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운영실장 보임은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정관 제97조에 따른다.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102 업무분장및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1.
제출부서/제출자	앵커사업단운영팀 / 심현미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팀/고일섭

1. 개정 이유

가.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추가

다. 직업교육혁신센터의 디지털배지 운영 업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고, 관련 위임전결 사항을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가.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 “전문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추가

나. 직업교육혁신센터의 업무분장에 디지털배지 운영 업무를 신설함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규정,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근거:

1) 교육부 2026년 앵커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2026.5.)

2) 디지털배지운영규정 제정

나. 관련부서 협의:

1) 앵커사업단-기획팀

2) 직업교육혁신센터-교수학습지원센터

다. 관련 위원회 심의: 직업교육혁신위원회(2026. 9. 21.)

라. 설명자료: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 경상국립대학교 5극3특 공유대학 설명자료 外

B-102 업무분장및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교무처) “생략” ① ~ ⑤ “생략” ⑥ 직업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 22. “생략” <신설> 23.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무처)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직업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 22. “현행과 같음” 23. 디지털배지 운영 업무 2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제10조의39(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 5극3특 공유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공유대학 교육 관련 사업계획 수립, 관리, 정산,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유대학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3. 공유대학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편성·관리 4. 참여대학 간 공동교육 및 학점교류 5.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강사 관리 및 지원 7. 공유대학 자원의 공동 활용 및 운영 8. 공유대학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제도개선 9. 기타 각종 사업단 관련 업무	
<신설>	제10조의40(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사업단 운영계획 및 제반 운영 2. 사업단 관련 운영위원회 관리업무 3. 사업단 사업 신청, 관리, 정산, 결과보고 4. 사업단 자체평가 및 발표회 업무 5. 대외기관 업무 협조 6. 기타 각종 사업단 관련 업무	

[별표 2] 60. 직업교육혁신센터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부총장	처장	센터장	팀장
1. ----------	"생략"	-	-	-	-	-
2. ----------	"생략"	-	-	-	-	-
3. ----------	"생략"	-	-	-	-	-
4. ----------	"생략"	-	-	-	-	-
5. ----------	"생략"	-	-	-	-	-
6. ----------	"생략"	-	-	-	-	-
7. ----------	"생략"	-	-	-	-	-
8. ----------	"생략"	-	-	-	-	-
<신설>						
8. 기타 각종 부 수업무	① "생략"	-	-	-	-	-

[별표 2] 60. 직업교육혁신센터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부총장	처장	센터장	팀장
1. ----------	"현행과 같음"	-	-	-	-	-
2. ----------	"현행과 같음"	-	-	-	-	-
3. ----------	"현행과 같음"	-	-	-	-	-
4. ----------	"현행과 같음"	-	-	-	-	-
5. ----------	"현행과 같음"	-	-	-	-	-
6. ----------	"현행과 같음"	-	-	-	-	-
7. ----------	"현행과 같음"	-	-	-	-	-
8. ----------	"현행과 같음"	-	-	-	-	-
9. 디지털배지 운영 업무	① 디지털배지 종류 및 발급 기준 수립 ② 디지털배지 승인 및 발급	○		○		
10. 기타 각종 부 수업무	"현행과 같음"	-	-	-	-	-

<신설>

[별표 2] 70.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사업단장
1. 사업단 운영계획 및 제반 운영	① 사업단 운영계획 수립 ② 사업단 운영업무 진행 ③ 사업단 운영결과 보고	○ ○	 ○
2. 사업단 관련 위원회 관리업무	①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② 운영위원회 안건 접수 및 작성 ③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 ④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⑤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 	 ○ ○ ○ ○
3. 사업단 사업 신청, 관리, 정산, 결과 보고	① 사업 부서업무 조정 및 진행 ② 사업 결과 보고 ③ 사업 현황 및 실적 관리	 ○ 	○ ○
4. 사업단 자체평가 및 발표회 업무	① 자체평가/발표회 계획 수립 ② 사업 자체평가/발표회 진행 ③ 사업 자체평가/발표회 결과 보고	○ ○	 ○
5. 대외기관 업무 협조	① 대외기관 업무 협조		○
6. 기타 각종 사업단 관련 업무	① 부서관련 기타 업무 기본계획 ② 부서관련 기타 업무운영, 관리 ③ 부서관련 기타 업무 공지, 협조 및 안내		○ ○ ○

<신설>

[별표 2] 71.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사업단장
1. 사업단 운영계획 및 제반 운영	① 사업단 운영계획 수립	○	
	② 사업단 운영업무 진행		○
	③ 사업단 운영결과 보고	○	
2. 사업단 관련 운영위원회 관리업무	①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	
	② 운영위원회 안건접수 및 작성		○
	③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		○
	④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
	⑤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
3. 사업단 사업 신청, 관리, 정산, 결과 보고	① 사업 부서업무 조정 및 진행		○
	② 사업 결과 보고	○	
	③ 사업 현황 및 실적 관리		○
4. 사업단 자체평가 및 발표회 업무	① 자체평가/발표회 계획 수립	○	
	② 사업 자체평가/발표회 진행		○
	③ 사업 자체평가/발표회 결과 보고	○	
5. 대외기관 업무 협조	① 대외기관 업무 협조		○
6. 기타 각종 사업단 관련 업무	① 부서관련 기타 업무 기본계획		○
	② 부서관련 기타 업무운영, 관리		○
	③ 부서관련 기타 업무 공지, 협조 및 안내		○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201 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09. 10.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최원영

1. 개정 이유

가.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관련 주저자 논문편수에 포함하는 K-MOOC콘텐츠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규정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관련 주저자 논문편수에 포함하는K-MOOC컨텐츠의 인정기준을 '15주차 K-MOOC컨텐츠'로 명확하게 표기함.

나. K-MOOC콘텐츠도 주저자 논문편수로 인정 → K-MOOC콘텐츠(15주차)도 주저자 논문편수로 인정

다. [별표 3-1] 연구실적물 배점 차등 적용

- K-MOOC콘텐츠(15주차): 80점
- K-MOOC콘텐츠(8주차): 40점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근거,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 보고완료

B-201 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제11조(승진임용) ① “생략”
② “생략”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현 직
소요
연수</th><th colspan="4">평가분야별 연간 업적평가점수</th><th rowspan="2">주저자
논문편수</th></tr><tr><th>교육 및
학생지도</th><th>연 구</th><th>산학협력</th><th>총점</th></tr><tr><td>부교수에서
교수 승진</td><td>5</td><td>127</td><td>12(10)</td><td>42</td><td>239</td><td>3</td></tr><tr><td>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td><td>6</td><td>127</td><td>12(10)</td><td>42</td><td>239</td><td>2</td></tr></table>•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주저자 논문편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K-MOOC콘텐츠도 주저자 논문편수로 인정한다. 단, 국제저명학술지급은 2편으로 인정
• “생략</td><td>제11조(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현 직
소요
연수</th><th colspan="4">평가분야별 연간 업적평가점수</th><th rowspan="2">주저자
논문편수</th></tr><tr><th>교육 및
학생지도</th><th>연 구</th><th>산학협력</th><th>총점</th></tr><tr><td>부교수에서
교수 승진</td><td>5</td><td>127</td><td>12(10)</td><td>42</td><td>239</td><td>3</td></tr><tr><td>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td><td>6</td><td>127</td><td>12(10)</td><td>42</td><td>239</td><td>2</td></tr></table>•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저자 논문편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K-MOOC콘텐츠(15주차)도 주저자 논문편수로 인정한다. 단, 국제저명학술지급은 2편으로 인정
• “현행과 같음”</td><td>K-MOOC 인정기준 구체화</td></tr>
<tr><td>제11조의2(정년보장 임용) ① “생략”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평가분야별 업적평가점수</th><th rowspan="2">주저자
논문편수</th></tr><tr><th>교육 및
학생지도</th><th>연 구</th><th>산학협력</th><th>총 점</th></tr><tr><td>정년보장
임용</td><td>635</td><td>60(50)</td><td>210</td><td>1,195</td><td>3</td></tr></table>•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주저자 논문편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K-MOOC콘텐츠도 주저자 논문편수로 인정한다. 단, 국제저명학술지급은 2편으로 인정</td><td>제11조의2(정년보장 임용) ① “현행과 같음”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평가분야별 업적평가점수</th><th rowspan="2">주저자
논문편수</th></tr><tr><th>교육 및
학생지도</th><th>연 구</th><th>산학협력</th><th>총 점</th></tr><tr><td>정년보장
임용</td><td>635</td><td>60(50)</td><td>210</td><td>1,195</td><td>3</td></tr></table>•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주저자 논문편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K-MOOC콘텐츠(15주차)도 주저자 논문편수로 인정한다. 단, 국제저명학술지급은 2편으로 인정</td><td>K-MOOC 인정기준 구체화</td></tr>
<tr><td>[별표3-1] 연구실적물 배점
<table><tr><th>항목</th><th>세 부 내 역</th><th>배점</th><th>비 고</th></tr><tr><td>K-MOOC콘텐츠</td><td>K-MOOC콘텐츠</td><td>80</td><td>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 콘텐츠에 한함.</td></tr></table></td><td>[별표3-1] 연구실적물 배점
<table><tr><th>항목</th><th>세 부 내 역</th><th>배점</th><th>비 고</th></tr><tr><td rowspan="2">K-MOOC콘텐츠</td><td>15주차</td><td>80</td><td rowspan="2">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 콘텐츠에 한함.</td></tr><tr><td>8주차</td><td>40</td></tr></table></td><td>K-MOOC 배점 세분화</td></tr>
<tr><td><신설></td><td>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d></td></tr>
</table>

B-202 울산과학대학교 교원보수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09. 07.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최원영

1. 개정 이유

가. 직제 신설에 따른 교원보직수당 표 개정

2. 주요 내용

가. 직제신설에 따른 교원보직수당 표에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부단장” 신설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관련 법령 붙임)

4. 관련 근거,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직제규정

나. 관련부서 협의:

다. 관련 위원회 심의: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B-202 울산과학대학교교원보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별표 5]
울산과학대학교 교원보직수당
<table><tr><th colspan="2">소속구분</th><th>보직명</th><th>보직수당(원)</th></tr><tr><td rowspan="2">대학</td><td rowspan="2">부속
기관</td><td>국제교류원장</td><td>500,000</td></tr><tr><td>학술정보원장, 대학언론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국제교류부원장,
글로컬비즈니스센터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부단장,
영유아보육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IR센터장, 기술사관육성사업단장,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장,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장,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단장,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총괄본부장,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부단장,
AID-X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부센터장,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장,
글로벌전문기술인재양성사업단장,
글로벌전문기술인재양성사업부단장,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단장,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부단장,
<신설>,
<신설>,
<신설></td><td>400,000</td></tr></table></td><td>[별표 5]
울산과학대학교 교원보직수당
<table><tr><th colspan="2">소속구분</th><th>보직명</th><th>보직수당(원)</th></tr><tr><td rowspan="2">대학</td><td rowspan="2">부속
기관</td><td>----------</td><td>---,---</td></tr><tr><td>----------, ----------,
----------,
----------,
----------,
----------,
----------,
----------, --------,
--------, ----------,
----------,
----------,
----------,
-------- ----------(----)----------.
-------- ----------(----)----------,
-------- ----------(----)----------,
----------,
----------,
----------,
----------,
----------,
----------,
----------,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부단장</td><td>400,000</td></tr></table></td><td></td></tr>
<tr><td><신설></td><td>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d></td></tr>
</table>

B-203 외국인교원채용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09. 23.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최원영

1. 개정 이유

가. 외국인교원 교수업적평가 기준, 배점 등 조정 및 정비

2. 주요 내용

가. 담당부서명 변경 반영: 직업교육혁신센터 → 직업교육/교양교육혁신센터

나. 대학발전기여도 최대배점 변경

-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최대배점 65점 → 70점
- 행정 처(단)장평가 및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최대배점 90점 → 95점

※ 최대배점 변경 사유: 학생취업처(진로취업팀/학생복지팀/학생상담센터)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점수 상향(10점 → 15점)

	계	행정처(단)장 평가	교무처[a] (교무/ 직업교육/ 교양교육/ 공학기술교육)	교무처 교수학습지원 센터	기획처/ 국제교류원[b]	입학처	학생취업처[d] (진로취업팀/학생복지팀/학생 상담센터)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c]
<대학발전기여도> 행정처(단)장 평가 + 기타대학업무협조도		40	10	10	10	15	15	10
	95	• 점수산출방식 : 행정처(단)장평가(처단장별 8점*5처장=40점) + 기타대학업무협조도(70점) = 최대95점 a), b) ,c)의 경우 부서합이 10점이 넘으면 10점 부여, d)의 경우 부서합이 15점이 넘으면 15점 부여 • 부서별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점수 : 부서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 구간의 해당 등급 점수 부여 단, 기획처의 경우 기여도 및 참여도에 따른 자체 심사에 의거 등급 점수 부여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근거,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 보고완료

B-203 외국인교원채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별표 1]
외국인교원 재계약 평가표
1. 교육 및 학생지도업적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3">세부평가항목</th></tr><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tr><td>직업 교육</td><td>10</td><td>직업교육 운영</td><td>10</td><td>직업교육혁신센터</td></tr></table></td><td>[별표 1]
외국인교원 재계약 평가표
1. 교육 및 학생지도업적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3">세부평가항목</th></tr><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tr><td>직업 교육</td><td>10</td><td>직업교육 운영</td><td>10</td><td>직업교육/교양교육혁신센터</td></tr></table></td><td>부서명 변경 반영</td></tr>
<tr><td>2. 대학발전기여도
나. 평가내용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3">세부평가항목</th></tr><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tr><td rowspan="4">대학 기여도</td><td rowspan="4">190</td><td>총장평가</td><td>100</td><td>총장</td></tr><tr><td><신설></td><td></td><td></td></tr><tr><td>행정처(단)장평가</td><td>40</td><td rowspan="2">90</td><td>행정처(단)장</td></tr><tr><td>기타대학업무협조도</td><td>65</td><td>대학 본부</td></tr></table></td><td>2. 대학발전기여도
나. 평가내용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3">세부평가항목</th></tr><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tr><td rowspan="4">대학 기여도</td><td rowspan="4">190</td><td>총장평가</td><td>80</td><td>총장</td></tr><tr><td>부총장평가</td><td>20</td><td>부총장</td></tr><tr><td>행정처(단)장평가</td><td>40</td><td rowspan="2">95</td><td>행정처(단)장</td></tr><tr><td>기타대학업무협조도</td><td>70</td><td>대학 본부</td></tr></table></td><td>최대배점 변경</td></tr>
<tr><td><신설></td><td>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td><td></td></tr>
</table>

B-204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09. 23.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최원영

1. 개정 이유

가. 강의전임교원 교수업적평가 기준, 배점 등 조정 및 정비

2. 주요 내용

가. 담당부서명 변경 반영: 직업교육혁신센터 → 직업교육/교양교육혁신센터

나. 대학발전기여도 최대배점 변경

-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최대배점 65점 → 70점
- 행정 처(단)장평가 및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최대배점 90점 → 95점

※ 최대배점 변경 사유: 학생취업처(진로취업팀/학생복지팀/학생상담센터)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점수 상향(10점 → 15점)

	계	행정처(단)장 평가	교무처[a] (교무/ 직업교육/ 교양교육/ 공학기술교육)	교무처 교수학습지원 센터	기획처/ 국제교류원[b]	입학처	학생취업처[d] (진로취업팀/학생복지팀/학생 상담센터)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c]
<대학발전기여도> 행정처(단)장 평가 + 기타대학업무협조도		40	10	10	10	15	15	10
	95	• 점수산출방식 : 행정처(단)장평가(처단장별 8점*5처장=40점) + 기타대학업무협조도(70점) = 최대95점 a), b) ,c)의 경우 부서합이 10점이 넘으면 10점 부여, d)의 경우 부서합이 15점이 넘으면 15점 부여 • 부서별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점수 : 부서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 구간의 해당 등급 점수 부여 단, 기획처의 경우 기여도 및 참여도에 따른 자체 심사에 의거 등급 점수 부여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근거,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 보고완료

B-204 강의전임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별표 1]
강의전임교원 재계약 평가표
1. 교육 및 학생지도업적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3">세부평가항목</th></tr>
<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
<tr><td rowspan="3">학생 지도</td><td rowspan="3">140</td><td>평생지도교수</td><td>20</td><td rowspan="2">학생복지팀</td></tr>
<tr><td>학생상담</td><td>120</td></tr>
<tr><td>학생이력관리</td><td>40</td><td>진로취업팀</td></tr>
<tr><td>직업 교육</td><td>10</td><td>직업교육 운영</td><td>10</td><td>직업교육혁신센터</td></tr>
</table></td><td>[별표 1]
강의전임교원 재계약 평가표
1. 교육 및 학생지도업적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3">세부평가항목</th></tr>
<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
<tr><td rowspan="3">학생 지도</td><td rowspan="3">140</td><td>평생지도교수</td><td>20</td><td rowspan="2">학생복지팀</td></tr>
<tr><td>학생상담</td><td>120</td></tr>
<tr><td>진로지원</td><td>40</td><td>진로취업팀</td></tr>
<tr><td>직업 교육</td><td>10</td><td>직업교육 운영</td><td>10</td><td>직업교육/교양교육혁신센터</td></tr>
</table></td><td>부서명 변경 반영</td></tr>
<tr><td>2. 대학발전기여도
나. 평가내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항목</th></tr>
<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 colspan="2">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
<tr><td rowspan="4">대학 기여도</td><td rowspan="4">190</td><td>총장평가</td><td colspan="2">80</td><td>총장</td></tr>
<tr><td>부총장평가</td><td colspan="2">20</td><td>부총장</td></tr>
<tr><td>행정처(단)장평가</td><td>40</td><td rowspan="2">90</td><td>행정처(단)장</td></tr>
<tr><td>기타대학업무협조도</td><td>65</td><td>대학 본부</td></tr>
</table></td><td>2. 대학발전기여도
나. 평가내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항목</th></tr>
<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 colspan="2">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
<tr><td rowspan="4">대학 기여도</td><td rowspan="4">190</td><td>총장평가</td><td colspan="2">80</td><td>총장</td></tr>
<tr><td>부총장평가</td><td colspan="2">20</td><td>부총장</td></tr>
<tr><td>행정처(단)장평가</td><td>40</td><td rowspan="2">95</td><td>행정처(단)장</td></tr>
<tr><td>기타대학업무협조도</td><td>70</td><td>대학 본부</td></tr>
</table></td><td>최대배점 변경</td></tr>
<tr><td></td><td><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td><td></td></tr>
</table>

B-205 초빙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09. 22.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최원영

1. 개정 이유

가. 상위법령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용제한 조항 삭제

2. 주요 내용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은 학생정원에 따른 교원 확보 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전문대학은 교원 법정정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음.

나. 위 조항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임용인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정원에 따른 교원 확보 시 '포함할 수 있는' 경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임.

다. 본교 초빙교원임용규정의 제9조(임용제한) 제1호(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합하여 법정 교원정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는 초빙교원의 임용인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근거,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안철환 주무관에게 2026년 9월 23(수) 11:27 유선으로 질의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이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임용인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 보고완료

B-205 초빙교원임용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9조(임용제한) 초빙교원의 임용인원과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합하여 법정 교원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불필요한 임용제한 조항 삭제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206 겸임교원에관한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09. 22.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최원영

1. 개정 이유

가. 상위법령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용제한 조항 삭제

2. 주요 내용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은 학생정원에 따른 교원 확보 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전문대학은 교원 법정정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음.

나. 위 조항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임용인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정원에 따른 교원 확보 시 '포함할 수 있는' 경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임.

다. 본교 겸임교원에관한규정의 제9조(임용제한)(겸임교원의 임용제한에 관한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4항에 의거 계열별 교원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겸임교원의 임용인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근거,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안철환 주무관에게 2026년 9월 23(수) 11:27 유선으로 질의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의 내용이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임용인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 보고완료

B-206 겸임교원에관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9조(임용제한) 겸임교원 임용제한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4항에 의거 계열별 교원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불필요한 임용제한 조항 삭제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209 교수업적평가규칙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09. 23.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최원영

1. 개정 이유

가. 교수업적평가 기준, 배점 등 조정 및 정비

2. 주요 내용

가. 평가기준 신설: 전공설계상담(AA)교원,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과제 지도교수, AI교육 등

나. K-MOOC 컨텐츠 15주차와 8주차 점수 구분 적용

다. 담당부서명 변경 반영: 직업교육혁신센터 → 직업교육/교양교육혁신센터

라. 대학발전기여도 최대배점 변경

-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최대배점 65점 → 70점
- 행정 처(단)장평가 및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최대배점 90점 → 95점

※ 최대배점 변경 사유: 학생취업처(진로취업팀/학생복지팀/학생상담센터)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점수 상향(10점 → 15점)

	계	행정처(단)장 평가	교무처[a] (교무/ 직업교육/ 교양교육/ 공학기술교육)	교무처 교수학습지원 센터	기획처/ 국제교류원[b]	입학처	학생취업처[d] (진로취업팀/학생복지팀/학생상담센터)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c]
<대학발전기여도> 행정처(단)장 평가 + 기타대학업무협조도		40	10	10	10	15	15	10
	95	• 점수산출방식 : 행정처(단)장평가(처단장별 8점*5처장=40점) + 기타대학업무협조도(70점) = 최대95점 a), b) ,c)의 경우 부서합이 10점이 넘으면 10점 부여, d)의 경우 부서합이 15점이 넘으면 15점 부여 • 부서별 기타대학업무협조도 점수 : 부서별 평가기준에 의한 취득 점수 구간의 해당 등급 점수 부여 단, 기획처의 경우 기여도 및 참여도에 따른 자체 심사에 의거 등급 점수 부여						

3.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 근거, 관련 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 보고완료

B-209 교수업적평가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1. 교육 및 학생지도업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학생지도	30	평생지도교수	10	학생복지팀
		동아리 지도교수	10	
		학생상담	10	
		진로지원	20	진로취업팀
		<신설>		
직업교육	20	직무연수	5	교무팀
		직업교육 운영	20	직업교육혁신센터

[별표 2] 2. 연구업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평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5) MOOC 콘텐츠	80	K-MOOC콘텐츠	80	교수학습지원센터 평생교육원(Hive사업단)
		<신설>		
		UC-MOOC콘텐츠	30	<신설>
<신설>		<신설>		

개정(안)

[별표 1] 1. 교육 및 학생지도업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학생지도	30	평생지도교수	10	학생복지팀
		동아리 지도교수	10	
		학생상담	10	
		진로지원	20	진로취업팀
		전공설계상담(AA)교원	**10**	**교무팀**
직업교육	20	직무연수	5	교무팀
		직업교육 운영	20	**직업교육/교양교육혁신센터**

[별표 2] 2. 연구업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평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5) MOOC 콘텐츠	80	**K-MOOC콘텐츠 (15주차)**	**80**	**교수학습지원센터, 앵커사업단**
		K-MOOC콘텐츠 (8주차)	**40**	
		UC-MOOC콘텐츠	30	**교수학습지원센터, 앵커사업단, 평생교육원**
6)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과제 지도교수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과제 지도**	**30**	**교무팀**

개정사유

세부항목, 담당부서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3] 3. 산학협력업적	[별표 3] 3. 산학협력업적	최대배점 변경

현행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대학보고서	40	대학주관 보고서 작성	40	기획팀/산학협력단/진로취업팀
		처/단 주관 산학협력 개발보고서 작성	10	
		학부(과) 기반 보고서 작성	10	
현장실습	30	학기제 국내·외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지도	30	현장실습지원센터/국제교류원/교무팀
		계절제 국내·외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지도	30	
		<신설>		
창업교육 및 교원창업	20	학생창업 지도	20	창업창직교육센터
		교원창업	20	
		창업협동조합	20	
취업교육	15	재학생 취업교육 기획/운영	10	학생취업처
		재학생 취업특강	10	
<신설>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대학보고서	40	**재정지원사업보고서**	**40**	기획팀/산학협력단/진로취업팀
현장실습	**40**	학기제 국내·외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지도	30	현장실습지원센터/국제교류원/교무팀
		계절제 국내·외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지도	30	
		현장실습 PM	**30**	
창업교육 및 교원창업	20	학생창업 지도	20	창업창직교육센터
		교원창업	20	
		<삭제>		
취업교육	15	**진로취업교육 기획/운영**	10	학생취업처
		진로취업특강	10	
AI교육	**40**	**AI인력양성(AI PM 교원)**	**20**	**교무팀, 기획팀, 산학협력단, AID-X센터, AID전환중점 전문대학지원사업단, 교수학습지원센터**
		AI인력양성(AI 지정 프로그램 수행)	**20**	
		AI인력양성(AI자격 취득)	**30**	
		AI인력양성((AI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	

[별표 4] 4. 봉사업적

현행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사회봉사	30	사회봉사	30	사회봉사지원센터/교무팀

[별표 4] 4. 봉사업적

개정(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최대배점	세부항목	최대배점	담당부서
사회봉사	30	**사회봉사 활동**	30	사회봉사지원센터/**앵커사업단**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별표 5] 5. 대학발전기여도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항목</th></tr><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 colspan="2">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tr><td rowspan="4">대학 기여도</td><td rowspan="4">190</td><td>총장평가</td><td colspan="2">80</td><td>총장</td></tr><tr><td>부총장평가</td><td colspan="2">20</td><td>부총장</td></tr><tr><td>행정처(단)장평가</td><td>40</td><td rowspan="2">90</td><td>행정처(단)장</td></tr><tr><td>기타대학업무협조도</td><td>65</td><td>대학 본부</td></tr></table></td><td>[별표 5] 5. 대학발전기여도
<table><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항목</th></tr><tr><th>항목</th><th>최대 배점</th><th>세부항목</th><th colspan="2">최대 배점</th><th>담당부서</th></tr><tr><td rowspan="4">대학 기여도</td><td rowspan="4">190</td><td>총장평가</td><td colspan="2">80</td><td>총장</td></tr><tr><td>부총장평가</td><td colspan="2">20</td><td>부총장</td></tr><tr><td>행정처(단)장평가</td><td>40</td><td rowspan="2">95</td><td>행정처(단)장</td></tr><tr><td>기타대학업무협조도</td><td>70</td><td>대학 본부</td></tr></table></td><td></td></tr>
<tr><td><신설></td><td>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td><td></td></tr>
</table>

B-210 전임교원주당책임시간및초과수당 지급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1.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 / 이만호

1. 개정 이유

가. 직제 신설에 따른 보직교원 주당 책임시간 표 개정

2. 주요내용

가. 부속기관 중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부단장” 신설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 직제규정
나.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 해당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 해당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

B-210 전임교원주당책임시간및초과수당지급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별표 3] 보직교원 주당 책임시간
<table><tr><th colspan="2">소속 구분</th><th>보직명</th><th>책임시간</th></tr><tr><td>대학</td><td>부속기관</td><td>국제교류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언론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국제교류부원장, 글로컬비즈니스센터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부단장,
영유아보육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IR센터장,
기술사관육성사업단장,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단장,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장,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단장.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총괄본부장,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부단장,
지산학교육센터장(ECC),
지역협업센터장(RCC), 기업협업센터장(ICC),
신산업특화센터장, AID-X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부센터장,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장,
글로벌전문기술인재양성사업단장,
글로벌전문기술인재양성사업부단장,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단장,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부단장,
<신설>,
<신설>,
<신설></td><td>8</td></tr></table></td><td>[별표 3] 보직교원 주당 책임시간
<table><tr><th colspan="2">소속 구분</th><th>보직명</th><th>책임시간</th></tr><tr><td>대학</td><td>부속기관</td><t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극3특 공유대학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전문대학특성화선도대학육성사업부단장</td><td>8</td></tr></table></td><td></td></tr>
<tr><td><신설></td><td>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d></td></tr>
</table>

B-302 울산과학대학교일반직원복무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10. 2.
제출부서/제출자	총무팀/이상민

1. 개정 이유

2026년 제2차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른 개정

2. 주요 내용

가. 제22조(특별휴가)제1항 2호 회갑, 5호 탈상 삭제

나. 제22조(특별휴가)제1항 4호 사망 대상별 휴가 일수 변경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규정,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2026년 제2차 (정기) 노사협의회 의결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총장 보고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해당 없음

B-302 울산과학대학교일반직원복무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2조(특별휴가) ① “생략” 1. “생략” 2.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1일 4. 사망: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일, 3촌이내 친족 3일 5. 탈상: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1일, 형제자매 1일 6. “생략” ② ~ ⑱ “생략”	제2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4. 사망: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5. <삭제>** 6. “현행과 같음” ② ~ ⑱ “현행과 같음”	2026년 제2차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른 개정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417 대학기금 운영 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30.
제출부서/제출자	재무회계팀/이인주

1. 개정 이유

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2항에 의한 특정목적기금 적립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관리위원회는 특정목적기금 적립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
나.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자금 운영계획, 운용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규정,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 사립학교법
나. 관련부서 협의: 대외협력실, 기획팀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없음

B-417 대학기금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1.> 2. “생략” 3. 특정목적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단, 기금의 자금 운영계획, 운용상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함	**제7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한 특정목적기금 적립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 기금의 자금 운영계획, 운용상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함**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10조(기금의 사용) ① “생략” ② 특정목적기금 및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일정 금액 도달 시까지 사용을 유보한다. 단, 특정목적기금 사용 대상 학과와 기관이 해당 발전기금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과 총장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특정목적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④ ~ ⑤ “생략	**제10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목적기금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일정 금액 도달 시까지 사용을 유보한다. 단, 특정목적기금 사용 대상 학과와 기관이 해당 발전기금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과 총장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정목적기금 사용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502 수강지도세칙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8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 이귀영

1. 개정 이유

가. 2027년도 신입생부터 간호학과 졸업학점 축소

2. 주요 내용

가. [별표 1] 1. 일반과정 졸업요건 간호학과 2027학년도 이수 졸업학점 134학점으로 변경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 근거: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보고 완료

B-502 수강지도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1]

1. 일반과정 졸업요건

가. 입학

구분	입학연도		전공	교양	교양中 외국어	AI 교과목	현장실습 또는 현장교육	졸업학점
2년제	1998 이전		55	-	-	-		80
	1999 ~ 2007		55	12	-	-		80
	2008 이후		55	12	2	-		80
	2018 이후		50	10	2	-		74
		성인학습자 학과	50	미적용				60
	2026 이후		48	10	-	2		74
		성인학습자 학과	50	미적용				60
	2027 이후		48	10	-	2	2	74
		성인학습자 학과	50	미적용				60
3년제	1998 이전		80	-	-	-		120
	1999 ~ 2002		80	12	-	-		120
	2003		80	15	-	-		120
	2004 ~ 2007		80	15	4	-		120
	2008 ~ 2010	간호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80	15	4	-		120
		컴퓨터정보학부, 공간디자인학부	80	15	2	-		120
	2011 ~ 2012		80	15	4	-		120
	2013 이후		80	18	4	-		120
	2018 이후		72	14	2	-		110
	2026 이후		70	14	-	2		110
	2027 이후		70	14	-	2	2	110
4년제	2013 이후		100	24 (간호학과 25)	4	-		140
	2018 이후		100	24 (간호학과 25)	2	-		137
	2026 이후		100	24 (간호학과 25)	-	2		137
	<신설>							

1) ~ 2) "생략"

개정(안)

[별표1]

1. 일반과정 졸업요건

가. 입학

구분	입학연도		전공	교양	교양中 외국어	AI 교과목	현장실습 또는 현장교육	졸업학점
2년제	1998 이전		55	-	-	-		80
	1999 ~ 2007		55	12	-	-		80
	2008 이후		55	12	2	-		80
	2018 이후		50	10	2	-		74
		성인학습자 학과	50	미적용				60
	2026 이후		48	10	-	2		74
		성인학습자 학과	50	**미적용**				60
	2027 이후		48	10	-	2	2	74
		성인학습자 학과	50	미적용				60
3년제	1998 이전		80	-	-	-		120
	1999 ~ 2002		80	12	-	-		120
	2003		80	15	-	-		120
	2004 ~ 2007		80	15	4	-		120
	2008 ~ 2010	간호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80	15	4	-		120
		컴퓨터정보학부, 공간디자인학부	80	15	2	-		120
	2011 ~ 2012		80	15	4	-		120
	2013 이후		80	18	4	-		120
	2018 이후		72	14	2	-		110
	2026 이후		70	14	-	2		110
	2027 이후		70	14	-	2	2	110
4년제	2013 이후		100	**25**	4	-	-	140
	2018 이후		100	**25**	2	-	-	137
	2026 이후		100	**25**	-	2	-	137
	2027 이후		**100**	**25**	**-**	**2**	**-**	**134**

1) ~ 2)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2027 이후 간호학과 졸업학점 134학점 축소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나. 편입학
1) ~ 2) “생략”
3) 2027 이후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전공</th><th rowspan="2">교양</th><th rowspan="2">AI 교과목</th><th rowspan="2">현장실습 또는 현장교육</th><th rowspan="2">졸업학점 (인정학점 포함)</th></tr>
<tr><th>1학년 편입생</th><th colspan="2">2학년 이상 편입생</th></tr>
<tr><td rowspan="2">2년제</td><td rowspan="2">48</td><td>인정 전공학점 있는 경우</td><td>48</td><td colspan="3" rowspan="6">“가”와 동일</td><td>74</td></tr>
<tr><td>인정 전공학점 없는 경우</td><td>34</td><td></td></tr>
<tr><td rowspan="2">3년제</td><td rowspan="2">70</td><td>인정 전공학점 있는 경우</td><td>70</td><td>110</td></tr>
<tr><td>인정 전공학점 없는 경우</td><td>52</td><td></td></tr>
<tr><td rowspan="2">4년제</td><td rowspan="2">100</td><td>인정 전공학점 있는 경우</td><td>100</td><td>137</td></tr>
<tr><td>인정 전공학점 없는 경우</td><td>80</td><td></td></tr>
<tr><td colspan="8">① ~ ③ “생략”</td></tr>
</table></td><td>나. 편입학
1) ~ 2) “현행과 같음”
3) 2027 이후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전공</th><th rowspan="2">교양</th><th rowspan="2">AI 교과목</th><th rowspan="2">현장실습 또는 현장교육</th><th rowspan="2">졸업학점 (인정학점 포함)</th></tr>
<tr><th>1학년 편입생</th><th colspan="2">2학년 이상 편입생</th></tr>
<tr><td rowspan="2">2년제</td><td rowspan="2">48</td><td>인정 전공학점 있는 경우</td><td>48</td><td colspan="3" rowspan="6">“가”와 동일</td><td>74</td></tr>
<tr><td>인정 전공학점 없는 경우</td><td>34</td><td></td></tr>
<tr><td rowspan="2">3년제</td><td rowspan="2">70</td><td>인정 전공학점 있는 경우</td><td>70</td><td>110</td></tr>
<tr><td>인정 전공학점 없는 경우</td><td>52</td><td></td></tr>
<tr><td rowspan="2">4년제</td><td rowspan="2">100</td><td>인정 전공학점 있는 경우</td><td>100</td><td>134</td></tr>
<tr><td>인정 전공학점 없는 경우</td><td>80</td><td></td></tr>
<tr><td colspan="8">① ~ ③ “현행과 같음”</td></tr>
</table></td><td></td></tr>
<tr><td><신설></td><td>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d></td></tr>
</table>

B-526 학생역량인증제운영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8.
제출부서/제출자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팀/고일섭

1. 개정 이유

가. 학생역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인증점수 및 획득 기준점수의 세부기준 근거를 정비하고, 인증서 발급 방식에 디지털배지를 추가

2. 주요내용

가. 제3조(용어의 정의)의 적용 문서 명칭을 “이 지침”에서 “이 규정”으로 정비함.

나. 제9조(인증점수 산출식) 및 제10조(인증단계 및 기준)의 세부기준 제정 근거를 “내규”에서 “별도”로 변경함.

다. 제11조의 제목을 “인증 기간”에서 “인증서 발급”으로 변경하고, CLOVER 시스템을 통한 자율 출력 외에 디지털배지 발급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배지 발급 방식을 추가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1) 디지털배지운영규정 신규 제정

2)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실-205(2026. 6. 5.) 「2026학년도 디지털배지(Digital Badge) 인증 운영 계획(안)

나. 관련부서 협의 : 교수학습지원센터(2026. 9. 2.)

다. 관련 위원회 심의 : 직업교육혁신위원회(2026. 9. 21.)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 사전 보고완료

B-526 학생역량인증제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어 및 자구 정비
제9조(인증점수 산출식) 역량 인증 체계에 따른 역량별 인증점수 산출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인증점수 산출식)** 역량 인증 체계에 따른 역량별 인증점수 산출식은 **별도**로 정한다.	세부기준 근거 정비
제10조(인증단계 및 기준) ① “생략” ② 핵심역량 달성을 위한 역량별 획득 기준점수는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인증단계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핵심역량 달성을 위한 역량별 획득 기준점수는 **별도**로 정한다.	세부기준 근거 정비
제11조(인증 기간) 학생역량 인증제는 연중으로 운영하며 CLOVER 시스템에서 ‘UC 핵심역량 CLOVER 인증서(양식B526-1)’를 자율 출력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서 발급)** 학생역량 인증제는 연중으로 운영하며 CLOVER 시스템에서 'UC 핵심역량 CLOVER 인증서(양식B526-1)'를 자율 출력**하거나, 디지털배지 발급 시스템을 통하여 디지털배지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제목 변경, 디지털배지 발급 근거 마련
제13조(관련문서)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신설>	**제13조(관련문서)**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디지털배지운영규정(UCS-B-549)**	관련 규정 추가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527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5.
제출부서/제출자	현장실습지원센터/박명관

1. 개정 이유

가. 산학지원팀-1684(2026. 8. 7.)「현장교육 활성화 TFT 회의 결과 보고(5차)」 준용

나. 주요보직자 및 학부(과)장 회의록(2026. 8. 10. 자) 준용

나. 전체 교직원 회의자료(2026. 8. 24. 자) 준용

2. 주요 내용

가. 졸업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최대학점 확대(4→6학점)

나. 계절제 현장실습 성적부여를 평점 또는 SS, S/U에서 SS, S/U로 부여함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규정,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1) 산학지원팀-1684(2026. 8. 7.)「현장교육 활성화 TFT 회의 결과 보고(5차)」

2) 전체 교직원 회의자료(2026. 8. 24. 자)

나. 관련부서 협의: 교무팀, 산학협력단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해당없음

B-527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제25조(학점부여 및 교과명칭) ① ~ ③ “생략”
④ 졸업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학점은 최대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제 현장실습은 4학점을, 학기제 현장실습은 16학점을 인정한다. 단, 인정학점 외 실습수행 학기 중 추가로 야간강좌 등을 이수하여 실습학점 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는 아래와 같은 과목으로 나누어 학점을 부여하되, 계절제 현장실습과 학기제 현장실습의 구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table>
<tr><th>프로그램명</th><th>교과목명</th><th>이수구분</th><th>학점</th><th>성적부여</th></tr>
<tr><td rowspan="3">계절제 현장실습</td><td>현장실습(1),(2),(3)</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신설></td><td></td><td></td><td></td></tr>
<tr><td><신설></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학기제 현장실습</td><td>학기제현장실습(현장설계)</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학기제현장실습(현장실무)</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학기제현장실습(과제수행)</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학기제현장실습(과제연구)</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 colspan="3">계</td><td>20</td><td></td></tr>
</table>
</td>
<td>제25조(학점부여 및 교과명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졸업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 학점은 최대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제 현장실습은 6학점을, 학기제 현장실습은 16학점을 인정한다. 단, 인정학점 외 실습수행 학기 중 추가로 야간강좌 등을 이수하여 실습학점 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는 아래와 같은 과목으로 나누어 학점을 부여하되, 계절제 현장실습과 학기제 현장실습의 구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table>
<tr><th>프로그램명</th><th>교과목명</th><th>이수구분</th><th>학점</th><th>성적부여</th></tr>
<tr><td rowspan="3">계절제 현장실습</td><td>현장실습(1)</td><td>전공선택</td><td>4</td><td>SS, S/U</td></tr>
<tr><td>현장실습(2)</td><td>전공선택</td><td>4</td><td>SS, S/U</td></tr>
<tr><td>현장실습(3)</td><td>전공선택</td><td>4</td><td>SS, S/U</td></tr>
<tr><td rowspan="4">학기제 현장실습</td><td>학기제현장실습(현장설계)</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학기제현장실습(현장실무)</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학기제현장실습(과제수행)</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학기제현장실습(과제연구)</td><td>전공선택</td><td>4</td><td>평점 또는 SS, S/U</td></tr>
<tr><td colspan="3"><삭제></td><td></td><td></td></tr>
</table>
</td>
<td>현장교육활성화 TFT 개편 준용</td>
</tr>
<tr>
<td><신설></td>
<td>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td>
<td></td>
</tr>
</table>

B-529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8.
제출부서/제출자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팀/고일섭

1. 개정 이유

가. 디지털배지운영 업무 추가

나. 디지털배지 운영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8조(업무)에 디지털배지 운영 업무 등 신설

나. 제12조제7항제5호의 역량 인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제8호의 심의 사항을 “CLOVER 역량 인증제 및 데이터기반 성과 관리”로 변경함.

다. 직업교육혁신위원회 심의 사항에 디지털배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되는 근거

1) 디지털배지운영규정 신규 제정

2)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실-205(2026. 6. 5.) 「2026학년도 디지털배지(Digital Badge) 인증 운영 계획(안)

나. 관련부서 협의 : 교수학습지원센터(2026. 9. 2.)

다. 관련 위원회 심의 : 직업교육혁신위원회(2026. 9. 21.)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 사전 보고완료

B-529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조(업무) 본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1. ~ 21. “생략” <신설> <신설> 22.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8조(업무)** 본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1. ~ 21. “현행과 같음” 22.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업무(민간자격증 포함) 23. 디지털배지 운영 업무 2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업무분장 체계 정비 (규정 간 불일치 해소)
제12조(직업교육혁신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 1. ~ 4. “생략” 5. 역량 진단 및 역량 인증체제에 관한 제반사항 6. ~ 7. “생략” 8. 핵심역량 인증체계 및 데이터기반 성과관리 9. “생략” <신설> 10.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2조(직업교육혁신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역량 진단 및 역량 인증 체계에 관한 제반사항 6. ~ 7. “현행과 같음” 8. CLOVER 역량 인증제 및 데이터기반 성과 관리 9. “현행과 같음” 10. 디지털배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역량 인증 용어 정비 및 디지털배지 운영 심의 사항 신설
제16조(관련문서)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신설>	**제13조(관련문서)**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10. 디지털배지운영규정(UCS-B-549)	관련 규정 추가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541 공학기술교육인증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30.
제출부서/제출자	공학기술교육센터 / 권지영

1. 개정 이유

가. 2027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기계기스템전공자의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신규 인증에 따른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제2조(대상학과)에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 추가

나. 제8조(적용)에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 2027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기계기스템전공자 추가

다. [별표1]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에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의 인증·비인증 프로그램 명칭 추가

라. [별표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 학위에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의 인증·비인증 학위명 추가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 근거: 공인원 2026-254 (2026.7.31.) 2026년 공학교육인증 평가 결과 안내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공학기술교육센터운영위원회 심의(2026. 9. 21).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보고 완료

B-541 공학기술교육인증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제2조(대상학과) 공학계열 학부(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신설></td><td>제2조(대상학과) 공학계열 학부(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td><td>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대상학과 추가</td></tr>
<tr><td>제8조(적용)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1. ~ 2. “생략”
<신설></td><td>제8조(적용)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 2027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기계시스템전공자</td><td>신규 운영에 따른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명시</td></tr>
<tr><td>[별표 1]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
<table>
<tr><th>학부(과)</th><th colspan="2">인증 프로그램</th><th colspan="2">비인증 프로그램</th></tr>
<tr><td rowspan="2">화학공학과</td><td>국문</td><td>화학공학기술</td><td>국문</td><td>화학공학</td></tr>
<tr><td>영문</td><td>Chem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td></tr>
<tr><td rowspan="2">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td><td>국문</td><td>전기공학기술</td><td>국문</td><td>전기전공</td></tr>
<tr><td>영문</td><td>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Division of Electrical Engineering</td></tr>
<tr><td rowspan="2"><신설></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td><td>[별표 1]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
<table>
<tr><th>학부(과)</th><th colspan="2">인증 프로그램</th><th colspan="2">비인증 프로그램</th></tr>
<tr><td rowspan="2">화학공학과</td><td>국문</td><td>화학공학기술</td><td>국문</td><td>화학공학</td></tr>
<tr><td>영문</td><td>Chem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td></tr>
<tr><td rowspan="2">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td><td>국문</td><td>전기공학기술</td><td>국문</td><td>전기전공</td></tr>
<tr><td>영문</td><td>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Division of Electrical Engineering</td></tr>
<tr><td rowspan="2">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td><td>국문</td><td>기계공학기술</td><td>국문</td><td>기계시스템전공</td></tr>
<tr><td>영문</td><td>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td><td>영문</td><td>Division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td></tr>
</table></td><td>기인증·비인증 프로그램 명칭 추가</td></tr>
</table>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별표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 학위
<table><tr><th>학부(과)</th><th colspan="2">인증 프로그램</th><th colspan="2">비인증 프로그램</th></tr><tr><td rowspan="2">화학공학과</td><td>국문</td><td>화학공학기술전문학사</td><td>국문</td><td>공업전문학사</td></tr><tr><td>영문</td><td>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Associate of Science in Engineering Technology</td></tr><tr><td rowspan="2">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td><td>국문</td><td>전기공학기술전문학사</td><td>국문</td><td>공업전문학사</td></tr><tr><td>영문</td><td>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Associate of Science in Engineering Technology</td></tr><tr><td rowspan="2"><신설></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d>[별표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 학위
<table><tr><th>학부(과)</th><th colspan="2">인증 프로그램</th><th colspan="2">비인증 프로그램</th></tr><tr><td rowspan="2">화학공학과</td><td>국문</td><td>화학공학기술전문학사</td><td>국문</td><td>공업전문학사</td></tr><tr><td>영문</td><td>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Associate of Science in Engineering Technology</td></tr><tr><td rowspan="2">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td><td>국문</td><td>전기공학기술전문학사</td><td>국문</td><td>공업전문학사</td></tr><tr><td>영문</td><td>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Associate of Science in Engineering Technology</td></tr><tr><td rowspan="2">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전공</td><td>국문</td><td>기계공학기술전문학사</td><td>국문</td><td>공업전문학사</td></tr><tr><td>영문</td><td>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Technology</td><td>영문</td><td>Associate of Science in Engineering Technology</td></tr></table></td><td></td></tr>
<tr><td><신설></td><td>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d></td></tr>
</table>

B-542 공학기술교육센터운영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30.
제출부서/제출자	공학기술교육센터 / 권지영

1. 개정 이유

가.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확대 및 운영체계 정비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평가·개선에 대한 공학기술교육센터의 지원 업무 명확화

2. 주요 내용

가. 제3조(업무)에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지원 업무 구체화

나. 재6조(기능) 공학기술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장비

다. 제7조(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현행화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 근거:

- 공학기술교육인증 규정(UCS-B-541)
- 화학공학기술 프로그램 운영 내규(UCS-B-542-01)
- 전기공학기술 프로그램 운영 내규(UCS-B-542-02)
- 기계공학기술 프로그램 운영 내규(UCS-B-542-03)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공학기술교육센터운영위원회 심의(2026. 9. 21).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보고 완료

B-542 공학기술교육센터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업무) 본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별 지원업무 4. ~ 5. “생략”	**제3조(업무)** 본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평가·개선에 관한** 지원업무 4. ~ 5. “현행과 같음”	센터의 지원 업무를 명확화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2. “생략” 3. 본 센터의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 사항 4.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5. 그 밖에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2. “생략” 3. **본 센터의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6.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 센터 및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구체화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며, 교무처장, 센터장, 기획처장, 직업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며, 교무처장, 센터장, 기획처장, **직업교육혁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공학기술교육인증 프로그램 관련 교원 등을 포함하여**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인증 프로그램 관련 교원의 운영위원회 참여 근거를 명확화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543 국내타대학등과의학점교류에관한규정 개정(안)

제출연월일	2026. 9 .28.
제출부서/제출자	교무팀/ 이귀영

1. 개정 이유

가. 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는 재정지원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에 한해 받음

나.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의 절차 추가

2. 주요 내용

가.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는 재정지원 사업별 운영 학점교류 교과목에 한함

나.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 교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속 학부(과)장에게 타대학 수강과목 전공학점 인정 신청 및 검토승인서를 제출하고, 학부(과)에서는 인정 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기재하여 교무처에 송부한다.

(서류 서식은 규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리)

다. 성적 산출방식은 본대학 기준 또는 협약서의 별도기준을 준용함을 표기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관련근거,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가. 관련 근거: 해당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해당 없음.

다. 관련 위원회 심의: 해당 없음.

라.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해당 없음.

마. 설명자료(사전 보고자료): 사전보고 완료

B-543 국내타대학등과의학점교류에관한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지원절차 및 서류) ①“생략” ②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서식 1] 1부. <신설> 2.“생략” <신설>	**제5조(지원절차 및 서류)** ①“현행과 같음” ② 학점교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서식 1] 1부. **(재정지원 사업별 운영 학점교류 교과목에 한 함)** 2.“현행과 같음” **③ 타 대학 학점교류 이수 교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속 학부(과)장에게 전공학점 인정 신청 및 검토승인서를 제출하여, 학부(과)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기재하여 교무처에 송부한다.**	전공학점으로 인정 받을 경우 서류 추가
제10조(학점인정) ①“생략” ② 타 대학 이수교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 성적 산출방식에 의하되, <신설>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생략”	**제10조(학점인정)** ①“현행과 같음” ② 타 대학 이수교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 성적 산출방식에 의하되, **협약서의 별도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협약서 기준 준용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